

지역고용활성화법안 (김태선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6477
----------	-------

발의연월일 : 2026. 1. 30.

발 의 자 : 김태선 · 김주영 · 박홍배
손명수 · 강득구 · 남인순
진선미 · 김영환 · 윤후덕
이용우 · 허영의원
(11인)

제안이유

지역 고용 문제는 단순한 일자리 부족을 넘어 산업구조 변화, 청년의 수도권 집중, 숙련노동자의 이탈, 고용서비스의 지역 간 격차 심화 등 구조적인 문제로 확산되고 있으며, 특히 울산을 비롯한 산업도시의 경우에 조선업 등 주력산업의 구인난과 고숙련 인력의 이탈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현행 고용정책은 중앙정부 중심으로 추진되어 지역 실정과 산업수요를 충분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지역 맞춤형 고용정책을 제도적으로 보장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지역의 고용실태와 산업 특성을 반영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고용정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중앙정부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책임을 명확히 하며, 청년과 숙련노동자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제도화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지역고용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

- 가. 지역 상황에 맞는 고용정책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역 일자리를 창출 및 유지하고 지역산업 수요에 맞는 인력을 양성함으로써 지역발전의 기반을 마련하여, 인구감소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나아가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나. 고용노동부장관은 지역고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함(안 제4조).
- 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지역 주민들에게 자신의 임기 중에 추진할 종합계획과 연도별 세부계획을 포함하는 일자리 창출대책을 수립·공표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그 내용 및 추진성과를 확인하여 공표·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 라. 고용노동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고용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수립·시행할 수 있고, 고용노동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립·시행하는 지역고용 활성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 마. 시·도지사 소속의 시·도 고용심의회, 시·군·구청장 소속의 시·군·구 고용심의회 등 지역고용심의회를 두어 지역고용 관련 사항에 대해 심의하도록 하고,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지역고용심의회

에 전문위원회와 사무국을 둘 수 있도록 함(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

바. 고용노동부장관은 지역 일자리사업의 효율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컨설팅·의견제시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사. 시·도지사는 소관 정책이 지역고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지역 고용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고용 및 직업 정보를 대상으로 하는 지역고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전산망의 이용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할 행정구역을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받기 위한 신청 절차 및 지원 내용을 규정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용위기지역 지정을 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지역고용활성화법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지역 산업 및 고용상황에 맞는 고용정책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역 일자리를 안정적으로 창출 및 유지하고 지역산업 수요에 맞는 인력을 양성하며, 지역발전 및 국가 균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상호간의 협력을 바탕으로 지역 상황에 맞는 일자리 창출의 촉진 및 효율적인 지역고용정책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종합적인 계획을 마련하고 관련 제도를 개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책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재원을 확보하거나 해당 지역의 고용상황에 맞게 조례를 제정하는 등 각종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지역고용 활성화 및 지역 일자리 창출 대책, 고용위기지역 지원을 위하여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내용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장 지역고용 활성화 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계

제4조(지역고용 정책기본계획의 수립)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지역고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고용정책 기본법」 제10조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이하 “고용정책 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여야 한다.

1. 지역고용 활성화를 위한 전략 및 정책 추진방향
2. 지역 상황에 맞는 일자리 창출 대책에 관한 사항
3. 지역고용 활성화를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역고용 활성화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고용정책 기본법」 제8조에 따른 고용정책 기본계획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그 밖에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지역 일자리 창출 대책의 수립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

할 지역 주민들에게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자신의 임기 중에 추진할 종합계획과 연도별 세부계획을 포함하는 일자리 창출대책(이하 “지역 일자리 창출대책”이라 한다)을 수립·공표할 수 있다.

② 지역 일자리 창출대책은 기본계획과 부합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 일자리 창출대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지역의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지역의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지역 일자리 창출대책의 내용 및 추진성과를 평가·확인하여 공표할 수 있다.

⑤ 지역 일자리 창출대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6조(지역고용 활성화 지원사업)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지역고용의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지역고용 활성화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지역 내 산업, 고용 관련 정보의 수집·제공 등 지역의 인력수급 동향 조사에 필요한 사업
2. 지역 내 인력수급 상황 및 교육훈련 수요에 맞는 인력양성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필요한 사업
3. 지역 내 청년·여성·고령자 등 대상별 고용정책의 수립과 시행

에 필요한 사업

4. 지역 내 또는 지역 간 인력수급 불균형 해소 및 산업·지역 간 근로자 이동 지원에 관한 사업
5. 지역 내 구직자·구인자에 대한 고용정보 제공·직업소개·직업 지도·취업알선 등 고용지원서비스에 관한 사업
6. 지역 기업의 고용창출·유지를 위한 고용환경의 개선, 근무형태의 변경, 인력의 재배치 등에 대한 지원에 필요한 사업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지원에 관한 사업
8. 그 밖에 지역 일자리 창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일자리 창출·유지 등 고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력하여 사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립·시행한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시·도 고용심의회)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고용정책기본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도 고용심의회(이하 “시·도 고용심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이 경우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지역 노사민정 간 협력 활성화를 위한 협의회(이하

“지역노사민정협의회”라 한다)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시·도 고용심의회의로 볼 수 있다.

1. 기본계획의 시행에 관한 사항
2. 지역 일자리 창출대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3. 지역고용 활성화 지원사업의 계획·추진에 관한 사항
4. 일자리 사업에 관한 성과평가 및 재원 분배에 관한 사항
5. 제11조에 따른 지역고용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6. 제13조에 따른 고용위기지역 지정 신청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지역고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시·도 고용심의회의의 구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8조(시·군·구 고용심의회의) ①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고용심의회의(이하 “시·군·구 고용심의회의”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지역 일자리 창출대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지역고용 활성화 지원사업의 계획·추진에 관한 사항
3. 일자리 사업에 관한 성과평가 및 재원 분배에 관한 사항
4. 제13조에 따른 고용위기지역 지정 신청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역고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시·군·구 고용심의회는 하나의 시·군·구 단위로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소속 시·군·구의 산업기반, 인구수 등을 고려하여 둘 이상의 시·군·구를 관할하는 하나의 시·도 고용심의회 및 시·군·구 고용심의회(이하 “지역고용심의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설치 기준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시·군·구 고용심의회 구성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9조(시·도 및 시·군·구 고용심의회 운영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고용심의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지역고용심의회 심의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지역고용심의회에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2조의2에 따른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가 시·도에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시·도 고용심의회 전문위원회로 볼 수 있다.

② 전문위원회는 지역고용심의회가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연구·심의한다. 이 경우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지역고용심의회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고용심의회 회의에 부칠 안건을 검

토하고 그 밖에 지역고용심의회를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고용심의회를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지역의 「직업안정법」 제2조의2제1호에 따른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역고용심의회, 전문위원회 및 사무국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⑥ 전문위원회, 사무국의 구성·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0조(지역고용 및 일자리사업에 대한 컨설팅 등 지원)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지역고용 활성화 및 일자리사업의 효율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지역의 산업 및 고용 여건 등에 적합한 일자리사업 추진을 위한 컨설팅
2. 지역고용 및 일자리사업에 대한 평가 및 그 평가에 따른 제도개선이나 예산반영에 관한 의견제시
3.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지역고용 활성화 및 일자리사업의 효율화를 위하여 고용정책심의회에서 정하는 사항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원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 또는 협조를 요청하는 등 필요한 조치

를 할 수 있다.

제11조(지역고용영향평가의 실시) ① 시·도지사는 소관 정책이 지역 일자리 증감 및 고용의 질 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이하 “지역고용영향평가”라 한다)하고, 그 결과를 정책의 수립·시행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지역고용영향평가 결과 등의 제공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지역고용영향평가의 절차,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2조(지역고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고용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고용 및 직업 정보를 대상으로 하는 전자정보시스템(이하 “지역고용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1. 지역의 구인·구직 정보
2. 지역의 직업 현황과 전망에 관한 정보 및 직업능력개발 훈련에 필요한 정보
3. 지역의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
4. 지역의 산업별 고용 동향 및 노동시장 정보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정보를 이용하여 제공하는 서비스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정보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할 지역주민의 고용·직업정보를 수집·보유·이용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자료제공 및 관계 전산망의 이용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집·보유·이용할 수 있는 고용·직업 관련 정보는 「고용정책 기본법」 제15조의2제3항 각 호의 정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정보로 한다.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고용정보시스템 구축·운영의 전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⑤ 지방자치단체의 업무관리담당자(제18조제2항에 따라 해당 업무를 위탁받은 관계기관 또는 단체의 업무관리담당자를 포함한다)는 지역고용정보시스템과 관련하여 알게 된 개인·법인 또는 단체의 정보를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⑥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정책 기본법」 제15조의2에 따른 고용정보시스템의 원활한 운용을 위하여 지역고용정보시스템과 연계할 수 있다.

제3장 고용위기지역의 지정 등

제13조(고용위기지역의 지정) ① 시·도지사는 관할 행정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로서 급격한 고용감소 등으로 특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고용위기지역(이하 “고용위기지역”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 고용심의회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지정 대상 행정구역 및 지원 내용을 기재하여 고용위기지역의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행정구역을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 받으려는 경우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군·구 고용심의회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지정 대상 행정구역 및 지원 내용을 기재하여 고용위기지역의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고용위기지역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 고용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해당 지역을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위기지역의 지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산업 및 실업 상황, 향후 대응 방향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단체나 기관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거나 실태조사를 할 수 있으며, 자료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관계 행정기관
2. 교육기관·연구기관
3. 사업주 또는 사업주단체

4. 노동조합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단체 또는 기관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고용위기지역의 지정 신청, 지정 절차, 지정 기간 및 지정 기간의 연장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고용위기지역에 대한 지원)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위기지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고용유지 및 고용촉진에 대한 지원

2. 실업자 취업 지원 대책 수립

3. 일자리 관련 사업비 우선 지원

4. 그 밖에 고용안정과 실업자 생활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

② 제1항에 따른 고용위기지역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고용위기지역에 대한 지정 해제)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지역의 고용 사정이 호전되는 등 지원의 필요성이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고용정책심의회를 거쳐 고용위기지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고용위기지역 지정 해제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고용위기지역 청년취업 지원)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18세 이상 34세 이하인 청년층의 고용위기지역 기업 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들을 고용하는 기업에 고용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지원 내용 및 지원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로 정한다.

제17조(청년근로자의 고용과 핵심인력의 장기 재직 촉진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고용위기지역 청년근로자의 고용과 핵심인력의 장기 재직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장 보칙 및 벌칙

제18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지역의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 시설과 인력을 갖춘 관계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가 해당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벌칙) 제12조제5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역 일자리 창출대책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고용정책 기본법」 제9조 및 제9조의2에 따라 수립·공표된 지역 일자리 창출대책은 이 법에 따라 수립·공표된 지역 일자리 창출대책으로 본다.

제3조(지역고용심의회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고용정책 기본법」 제10조에 따라 설치된 지역고용심의회, 지역고용심의회 전문위원회는 이 법에 따라 설치된 지역고용심의회, 지역고용심의회 전문위원회로 본다.

제4조(고용위기지역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고용정책 기본법」에 따라 행한 고용위기지역의 지정·해제 및 지원은 이 법에 따라 행한 고용위기지역의 지정·해제 및 지원으로 본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및 제9조의2를 각각 삭제한다.

제10조제1항 전단 중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를 “지방자치단체”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지역고용심의회 운영 등에 대하여는 「지역고용활성화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조제2항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4의2. 「지역고용활성화법」에 따른 고용위기지역의 지정 및 지정 해제에 관한 사항

제10조제6항 중 “정책심의회, 지역고용심의회”를 “정책심의회”로 한다.

제3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2조(업종별 고용조정의 지원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국내외 경제 사정의 변화 등으로 고용사정이 급격하게 악화되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는 업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사업주의 고용조정
 2. 근로자의 실업 예방
 3. 실업자의 재취업 촉진
 4. 그 밖에 고용안정과 실업자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
-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업종 중에서 특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에 속하는 사업주나 사업주단체·근로자단체 또는 그 단체의 연합체 등은 해당 업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해당 업종을 기간을 정하여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

정할 수 있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지정기간 중이라도 고용사정이 호전되는 등 특별한 지원의 필요성이 없어진 때에는 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지원 조치, 지정기간 및 지정기간의 연장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